# 2025년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 공고

『2025년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> 2025. 1. 7. 중소벤처기업부장관

-		$\sim$	711	$\mathbf{\cap}$
		업	JH	요
	 	_	- 11	

□ 사업명 : 스마트공장 수준확인
□ <b>사업 목적</b> :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화 수준진단을 지원
<ul><li>□ 사업 규모 : 2,000백만원</li><li>* 정부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</li></ul>
□ 지원 내용
<ul> <li>(스마트화 수준확인) 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업 스마트화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 제공</li> </ul>
<ul> <li>(고도화 전략 제공)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결정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 제공</li> </ul>
□ <b>지원 대상</b> : 국내 중소·중견기업

○ **(지원 규모)** 2,000개사 내외

□ 지원 규모 및 조건

(지원 조건) 수준확인 비용 전액 지원(기업당 최대 백만원)

## 2. 신청방법 및 자격 등

- □ 신청 기간·방법
  - (신청 기간) '25. 1. 7.(화) ~ 예산 소진시까지(수시 접수)
  - (신청 방법)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을 통해 온라인 신청
  - ☞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(www.smart-factory.kr) 접속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사업 안내 → 사업 공고
  - (제출 서류)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

#### 제출서류 목록

- 1. 사업신청서 및 자가진단표 각 1부
- 2.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
- 3.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  - \* 종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된 종된 사업장 명세 포함
- 4.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  - \* 제출서류 양식(신청서 등)은 사업공고 하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

### □ 신청 자격

- 국내 제조기업 중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
  - \*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 신청 가능하며(종된 사업장 포함), 증 빙서류(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) 제출 필요
  - 자체 역량으로 스마트공장 구축기업(정부 스마트공장 사업 미참여)
    - \* 참여 이력은 사업관리시스템(www.smart-factory.kr)에서 확인 가능
  - ❷ 자발적 고도화를 추진하여 스마트화 수준상승이 기대되는 기업
    - \* 정부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, 고도화 추진 관련 증빙자료 (스마트공장 관련 설비, 솔루션, 유지보수 내역 등) 제출 필요
  - ❸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

- (지원 제외 사항)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, 지원 대상에서 제외
- ▷ 휴·폐업중인 기업

- ▷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- ▷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
- ▷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- ▷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참여 중이거나, ▷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 자체 스마트공장을 구축 중인 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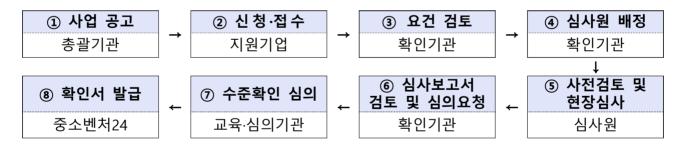
## 3. 평가 및 추진 절차

☞ 평가, 선정 등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## □ 평가절차

- (요건검토) 신청기업 중 자격 요건 검토 결과, 적합한 기업에 대해 심사절차 진행
- (수준확인) 심사원 배정 후 사전 검토 및 현장심사 진행
- o (최종심의) 현장심사보고서를 기반으로 수준확인 심의 추진

### □ 추진 절차



## 4. 유의사항

- ☞ 세부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 및 사업수행
- ㅇ 타 정부 지원 스마트공장 사업과 중복수행 불가
  - \* 자체 구축한 스마트공장에 대한 수준확인도 현재 구축 중인 경우 신청 불가

- 요건 검토 미흡사항에 대해 확인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미조치 또는 조치 미흡 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
-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발급 후 신청내용과 상이한 내용이 확인 될 경우, 확인서가 취소될 수 있음

## 5. 문의처

구분	담당기관	문의사항	전화
총괄기관	중소벤처기업부	시행계획 수립·총괄	1357
추진기관	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	사업 추진 문의	044-300-0955 044-300-0960
하이기교	스마트제조혁신협회	사업 신청·접수 등	02-3473-3777
확인기관	대한상공회의소	사업 수행 관련 문의	02-6050-3854